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87
----------	-------

발의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윤두현 · 구자근 · 권명호
金炳旭 · 김승수 · 김예지
박덕흠 · 백종현 · 성일종
유의동 · 윤주경 · 정희용
의원(12인)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비대면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가진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책임소재가 부족한 문제, 온라인 플랫폼 회사와 공급업체들 간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 “고객” 등 이 법의 적용대상 및 주요개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안 제6조).
- 다.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
- 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과 공급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온라인 플랫폼과 공급자 간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에 관한 정보 교환 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가.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통제하는 전자적 환경 하에서 공급자의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통제하는 전자적 환경 하에서 공급자가 광고를 할 수 있고, 고객이 공급자를 검색하여 온라인 플랫폼 밖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다.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공급자를 검색하여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공급자”란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고객과 거래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고객”이란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공급받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공급자와 고객 간의 계약”이란 공급자가 고객에게 유상으로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온라인 플랫폼과 고객 간의 계약”이란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온라인 플랫폼과 공급자 간의 계약”이란 공급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한다.

9. “사업자”란 이 법이 적용되는 계약에 있어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계약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이용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기본의무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는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보호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이용자에 대한 범죄행위

2. 생명·신체 또는 재산권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③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행해지는 이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보에 대한 조치 의무) 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불법적이거나 오인을 유발함으로써 피해 받을 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자에게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수정·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및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사실을 해당 정보가 게시된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게시하는 정보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색기능의 투명성)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공급자 또는 재화, 용역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검색 결과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영업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검색 결과에 대한 조작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특정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으로 인해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의 투명성)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표시되는 광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되는 정보가 광고라는 사실. 이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상호 등 광고주의 신원정보
3. 광고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자의 신원정보
4. 광고가 표시되는 이용자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제10조(이용후기 시스템의 운영)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후기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후기 정보를 수집, 처리 및 배열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후기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이용후기가 진실한 경험에 기인한 것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고객이 이용후기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것
3. 고객이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다른 공급자에 대

한 부정적인 이용후기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

4.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후기 게시를 거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할 것

5. 이용후기 게시를 거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이용후기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것

6. 이용후기가 배열되는 순위가 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후기에 작성일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이용자가 이용후기를 시간 순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용후기를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할 것. 이 경우 이용후기 게시 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8. 개별 이용후기에 첨부된 별점 등을 합산한 평균값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에 이용된 전체 이용후기의 개수를 표시할 것. 이 경우 이용후기가 일정 기간 동안 게시되는 경우에는 게시 기간이 만료된 이용후기는 합산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가 부적절한 이용후기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이용자에게 변경 사실에 대한 고지를 하였을 것
2. 변경된 계약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개정되거나 긴급한 보안상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조항 및 세부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해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제12조(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에 관한 고지의무)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자신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고객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아닌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청약의 접수, 대금 결제 및 지급, 계약의 이행, 청약철회로 인한 대금의 반환 등 공급자와 고객 간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급자에 관한 정보의 고지의무)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공급자가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사업자로서 제공하는지 여부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공급자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이 공급자와 고객 간의 계약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수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공급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공급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제14조(공급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고지의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아닌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게 된다는 사실
2. 공급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3.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4.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5. 공급자와 고객 간의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
6. 공급자와 고객 간의 원활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의사소통수단
7. 그 밖에 건전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전자적 기능 제공 의무)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공급자가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공급자가 고객과의 계약 체결에 관한 약관을 전자적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과 공급자 간의 계약을 통해 약관에 대하여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공급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지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고지하여야 한다.

1.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 30일 이상의 해지기간
2.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일 이상의

해지기간

3.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2년 이상인 경우: 90일 이상의 해지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공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를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급자에 대한 서비스 중지 및 제한)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공급자에게 서비스 중지 또는 제한의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또는 제한이 온라인 플랫폼과 공급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책임

제18조(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① 제2조제2호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및 피해보상 수단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수단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제공하는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와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명의로 표시되는 광고에 실제 거래 당사자는 공급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단을 행사하는 경우 고객은 공급자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해당하는 공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④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급자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은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및 피해보상 수단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온라

인 플랫폼운영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공급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중요업무 수행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청약의 접수, 대금 결제 및 지급, 계약의 이행, 청약철회로 인한 대금의 반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급자 또는 고객에게 야기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오인 표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 또는 고객의 정보,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자와 고객 간의 계약 조건 등에 대하여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로 인해 공급자 또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1조(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이용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7장 벌칙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
한 자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절차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3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4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이 기재된 문서를 이용자에게 제공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 내용의 변경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객 또는 공급자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